

2016년 8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강연 및 세미나 문의: Pierce Lee (이정운), [pierce@piercelee.com](mailto:pierce@piercelee.com)



# U.S. Antidumping Investigations: Trend, Post- Determination Strategy, and Forecast (최근 미국 반덤핑 관세 판정 동향, 사후대책, 타겟 가능성)

Pierce Lee  
(이정운)

2016년 8월 31일

## 반덤핑과 상계관세조사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미국 산업을 대표해 기업 또는 노동조합이 아래의 두 행정부처에 동시 제소:

- US Department of Commerce (DOC, 상무부)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무역위원회).

### 상무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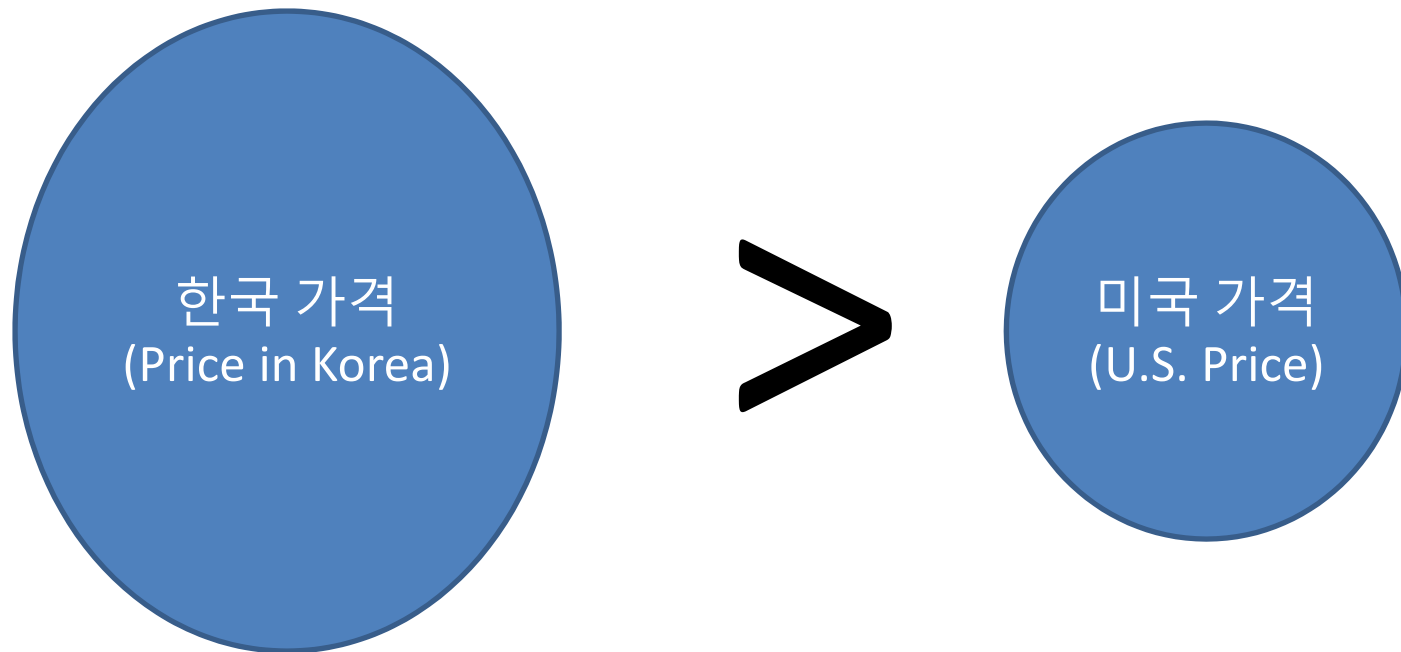
- 덤핑의 유무 및 덤핑마진 판단 (반덤핑 조사)
- 부당한 보조금 유무 및 보조금율(subsidy rate) 판단 (상계관세 조사)

### 무역위원회 조사:

- 부당한 가격의 수입품이 미국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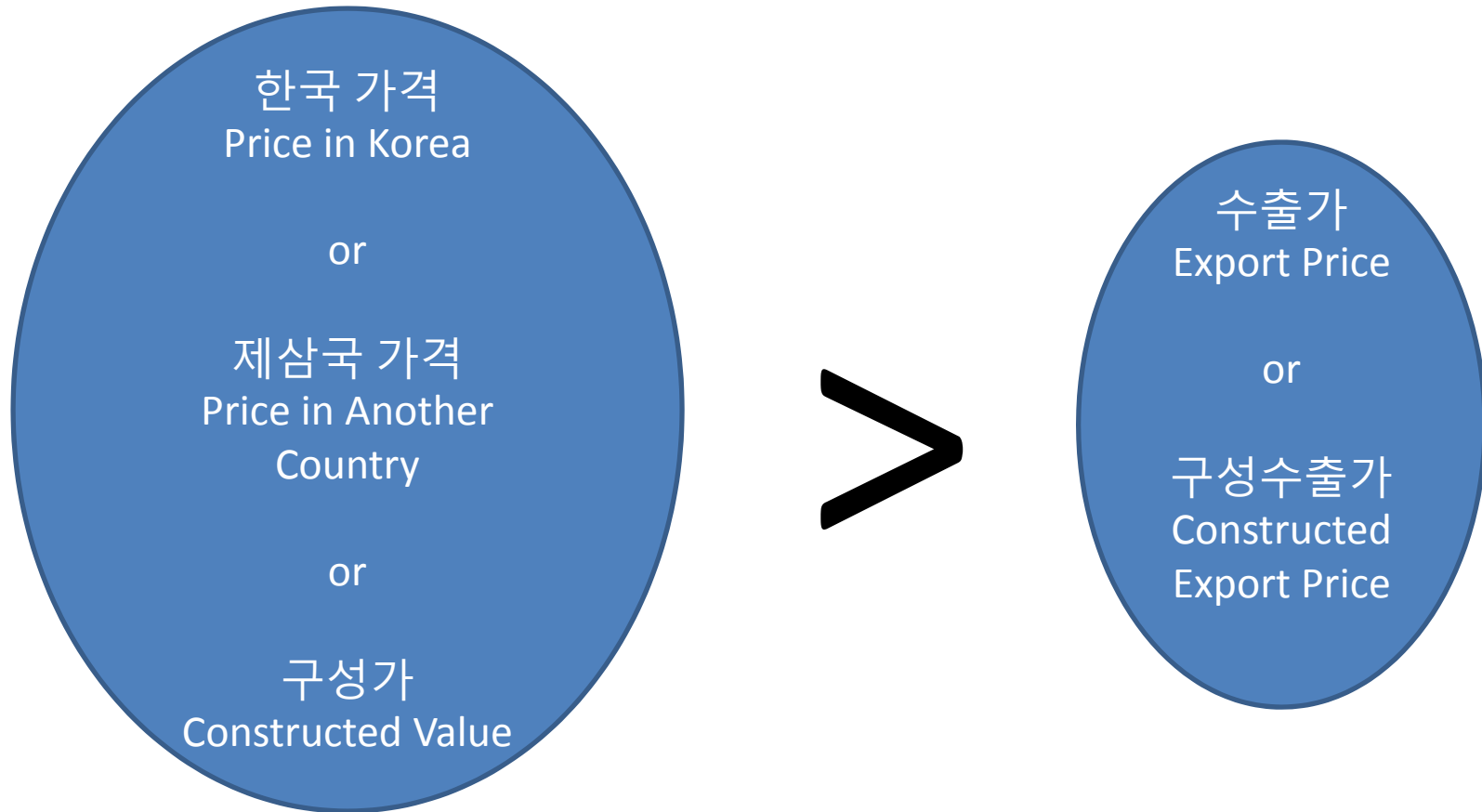
# Dumping (덤핑)

- 상무부는 수출자(생산자)별로 덤핑유무와 덤핑마진을 판단
  - 특정 수출자(생산자) 덤핑율
  - 기타업체 덤핑율
- 덤핑이란 특정 수출자의 물품이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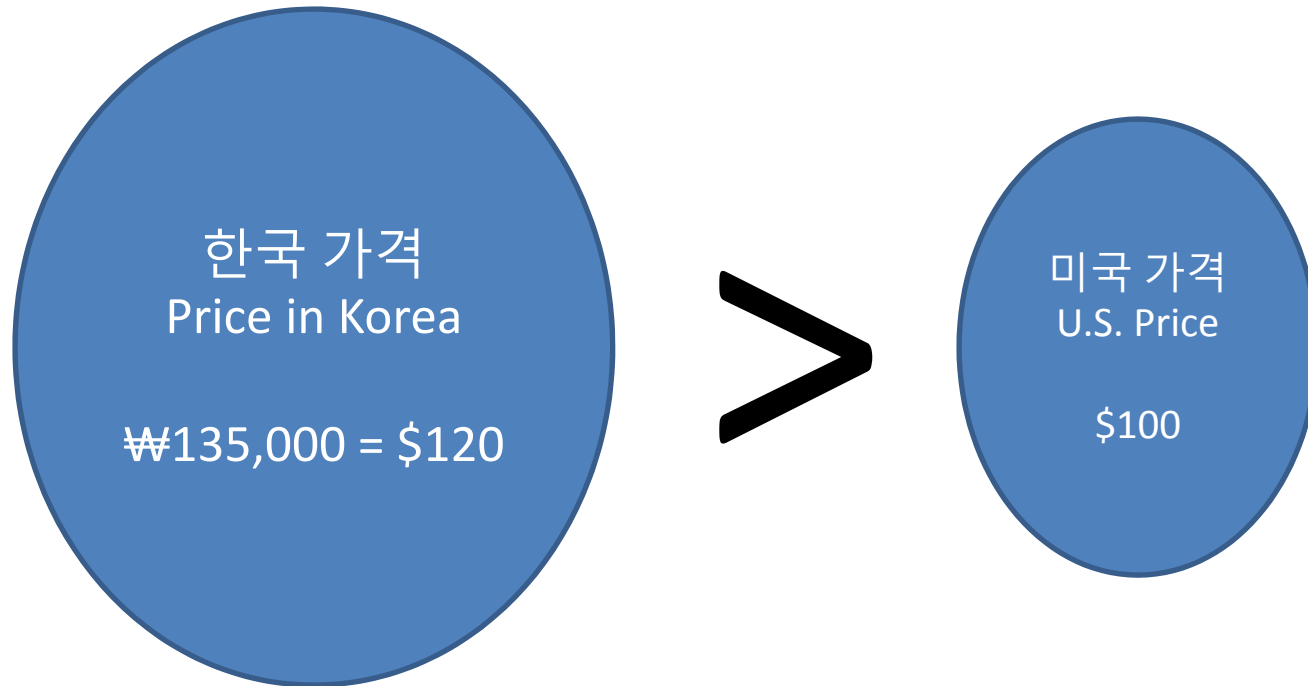


# 덤핑

- 다양한 비교방법



# 덤핑마진



$$\text{덤핑율} = \frac{\text{덤핑된 금액 (Dumped Amount)}}{\text{미국 가격 (U.S. Price)}} = \frac{\$20}{\$100} = 20\%$$

**반덤핑 관세 = \$20**

# 보조금 (Subsidies)

- 상계 가능한 보조금(Countervailable subsidies)은 정부가 직접 또는 민간기업을 통해서 다음의 특징을 가진 지원을 하는것을 의미한다
  - (1) a financial contribution (제정적 지원);
  - (2) that provides a benefit (혜택);
  - (3) to a specific industry or group of industries, or is export contingent (특정한 산업에게만 제공되거나 수출실적에 따른 보조금)
- 예: 현금 보조금, 할인 된 에너지 , 무료 토지 , 무이자 대출, 수출 에 대한 세액 공제 등

# 보조금

- 상무부는 수출자(생산자)별로 보조금유무와 보조금율(Subsidy Rate) 판단
  - 특정 수출자(생산자) 보조금율
  - 기타업체 보조금율

$$\text{보조금율} = \frac{\text{총 보조금 액수}}{\text{총 매출 (Or 수출 보조금의 경우 총 수출액)}}$$

$$= \frac{20 \text{억 원 (2015년 전기세 할인)}}{200 \text{억 원 (2015년 총매출)}} = \mathbf{10\%}$$

미국 수출가 = \$100  
**상계관세 = \$10**

##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

미국 무역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를 판단하는 기준 (모두를 증명해야하는 것은 아님)

- 미국 제품에 대한 가격압박
  - 미국시장에서 미국제품과 경쟁하는 수입 물품의 낮은 가격
  - 낮아지는 미국제품의 가격 또는 늘어나는 수요에도 불과하고 높아지지 않는 미국제품의 가격
- 미국 기업의 시장점유율 감소
  - 늘어나는 수입물품양
  - 미국제품의 판매량 감소 또는 늘어나는 수요에도 불과하고 높아지지 않는 미국제품의 판매량
- 미국내 생산과 설비 가동률 감소
- 미국 노동자 해고 또는 임금과 고용시간의 감소
- 미국내 제조 시설의 영구적 또는 임시 폐쇄
- 자본 투자 의 감소 및 연국개발비 감소
- 수익성 감소 및 국내 제조 관련 투자 수익
- 미국내 투자대비 수익성 감소



2016년 8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강연 및 세미나 문의: Pierce Lee (이정운), [pierce@piercelee.com](mailto:pierce@piercelee.com)

##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Process and Timing for U.S. AD/CVD Investigations

- 조사과정은 약 1년정도 소요
- 상무부와 무역위원회 조사 동시 진행. 각각의 조사마다 예비단계(preliminary phase) 최종단계(final phase)가 있음.
- 제소후 45일에서 6개월 사이 상무부가 긍정예비판정(preliminary affirmative determination)을 내리면 미국 관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해당물품의 정산(liquidation)을 중지하고 예상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액을 징수하기 시작
- 상무부와 무역위원회가 모두 긍정최종판결(affirmative final determinations)을 내리면,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명령("order")을 내림
-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명령은 5년 동안 유효 그리고 갱신가능. 갱신하려면 만약 해당 명령을 폐지할 경우 수입물품의 덤핑이 다시 시작되고 미국산업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을 입증해야 함.
- 덤핑율과 보조금율은 매년 재검토 (연례재심)
-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는 수입자가 지불해야함. 수출자가 대신 내어주거나 해당 금액을 수입자에게 지불하는것은 불법
-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불소급이 원칙. 수입자는 상무부가 긍정예비판정이 공표되는 날부터 추가 관세를 예치하거나 같은 금액의 관세보증(customs bond)을 제출해야함. 하지만 무역구제 조사를 대비한 급격한 수입물량을 증가를 나타내는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s) 결정이 있으면 예비판정공표날짜로부터 90일 전으로 소급적용

# 정산 (Liquidation)

## 미국 관세 통관 절차

1. 수입자는 수입시 미국관세청에 해당물품에 대한 정보 제공
2. 미국관세청은 수입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통관을 허가
3. 수입자는 스스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액을 예상하여 납부함
4. 미국관세청은 통관후 일년안에 납부된 예상관세액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반환을 해주거나 추가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이를 liquidation (정산)이라함
5. 수입자는 추가징수에 대비해 관세보증(customs bond)를 제출해야 함

2016년 8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강연 및 세미나 문의: Pierce Lee (이정운), [pierce@piercele.com](mailto:pierce@piercele.com)

## 2015년 이후 시작한 무역구제 조사

물품종류	조사건수
금속	73
화학	16
종이	8
타이어	7
가전	1
기타	3
합계	<b>108</b>

2016년 8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강연 및 세미나 문의: Pierce Lee (이정운), [pierce@piercele.com](mailto:pierce@piercele.com)

## 2015년 이후 시작한 무역구제 조사 - 금속

총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건수	<b>73</b>
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철강후판)	15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냉연강판)	13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내식강)	10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열연강판)	10
Circular Welded Carbon-Quality Steel Pipe (탄소강관)	6
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 (용접각관)	4
Finished Carbon Steel Flanges (플랜지)	4
Iron Mechanical Transfer Drive Components (트렌스퍼 드라이브 부품)	3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스테인레스 판재)	2
Welded Stainless Pressure Pipe (스테인레스 용접강관)	2
Silicomanganese (실리코망간)	1
Ferrovandium (페로바나듐)	1
Phosphor Copper (인동)	1

2016년 8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강연 및 세미나 문의: Pierce Lee (이정운), [pierce@piercele.com](mailto:pierce@piercele.com)

## 2015년 이후 시작한 무역구제 조사 - 화학

총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건수	<b>16</b>
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PET 합성수지)	6
Emulsion Styrene-Butadiene Rubber (ESBR 합성고무)	4
1-Hydroxyethylidene-1, 1-Diphosphonic Acid (하이드록시에틸리덴 디포스폰산, HEDP)	2
1, 1, 1, 2-Tetrafluoroethane (R-134a 냉매)	1
Hydrofluorocarbon Blends (HFC 계 냉매)	1
Ammonium Sulfate (황산암모늄)	1
Diocetyl Terephthalate (DOTP 가소제)	1

2016년 8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강연 및 세미나 문의: Pierce Lee (이정운), [pierce@piercele.com](mailto:pierce@piercele.com)

## 2015 이후 시작한 무역구제조사 - 기타

총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건수	19
종이	
Uncoated Paper (비코팅지)	7
Supercalendered Paper (강광택지)	1
타이어	
New Pneumatic Off-the-Road Tires (오프로드 타이어)	5
Truck and Bus Tires (트럭 버스 타이어)	2
가전	
Large Residential Washers (세탁기)	1
그외	
Amorphous Silica Fabric (실리카 직물)	2
Biaxial Integral Geogrid Products (지오그리드)	1

2016년 8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강연 및 세미나 문의: Pierce Lee (이정운), [pierce@piercele.com](mailto:pierce@piercele.com)

## 2015 이후 시작한 무역구제조사 – 국가별

총 반덤핑 조사 건수	<b>73</b>
중국	16
<b>한국</b>	<b>9</b>
인도	6
브라질	4
호주	3
네덜란드, 오만, 영국, 터키,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2 (각)
대만,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스페인, 일본, 터키,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 대만,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랍 에미리트, 필리핀, 베트남, 폴란드, 포르투갈	1 (각)

총 상계관세조사건수	<b>35</b>
중국	12
인도	6
<b>한국</b>	<b>4</b>
터키, 브라질	2
대만, 러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스리랑카, 캐나다, 인도네시아, 오만, 이탈리아	1 (각)

2016년 8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강연 및 세미나 문의: Pierce Lee (이정운), [pierce@piercele.com](mailto:pierce@piercele.com)

## 2015 이후 시작한 무역구제조사 – 한국대상

국가 & 물품	조사건수
중국	28
<b>한국</b>	<b>13</b>
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후판)	2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열연강판)	2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냉연강판)	2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내식강)	2
Ferrovandium (페로바나듐)	1
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 (용접각관)	1
Phosphor Copper (인동)	1
Emulsion Styrene-Butadiene Rubber (ESBR 합성고무)	1
Diocetyl Terephthalate (DOTP 가소제)	1
인도	12
브라질	6
터키	4



2016년 8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강연 및 세미나 문의: Pierce Lee (이정운), [pierce@piercelee.com](mailto:pierce@piercelee.com)

# 2015 이후 시작한 무역구제조사 – 한국대상 물품

##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내식강)

국가	덤핑율	보조금율	무역위원회
중국	209.97%	39.05% (Yieh Phui, All Others) 241.07% (Other SRA)	공정최종판결
인도	3.05% - 4.44%	8% - 29.46%	공정최종판결
이탈리아	92.12% (Marcegaglia) 12.63%	<i>de minimis</i> (Marcegaglia, Acciaieria) 38.51% (Ilva) 13.02% (All Others)	공정최종판결
대만	3.77%	<i>de minimis</i>	공정최종판결
한국	<b>47.80% (현대제철)</b> <b>8.75% (동국제강/유니온스틸)</b> <b>31.73% (기타)</b>	<b>허용최소치(<i>de minimis</i>)</b> <b>(동국제강/유니온스틸)</b> <b>1.19% (현대제철, 기타)</b>	공정최종판결

2016년 8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강연 및 세미나 문의: Pierce Lee (이정운), [pierce@piercele.com](mailto:pierce@piercele.com)

## 2015 이후 시작한 무역구제조사 – 한국대상 물품

###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냉연강판)

국가	덤핑율	보조금율	무역위원회
중국	265.79%	256.44%	공정최종판결
일본	71.35%	N/A	공정최종판결
브라질	14.34% - 35.43%	11.09% - 11.31%	미정
인도	7.6%	10%	미정
러시아	<i>de minimis</i> (Novolipetsk) 13.36%	<i>de minimis</i> (Severstal) 6.95%	미정
영국	5.4% - 25.56%	N/A	미정
<b>한국</b>	<b>6.32% (포스코)</b> <b>34.33% (현대제철)</b> <b>20.33% (기타)</b>	<b>58.36% (포스코)</b> <b>3.91% (현대제철)</b> <b>3.91% (기타)</b>	<b>미정</b>

2016년 8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강연 및 세미나 문의: Pierce Lee (이정운), [pierce@piercelee.com](mailto:pierce@piercelee.com)

## 2015 이후 시작한 무역구제조사 – 한국대상 물품

###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열연강판)

국가	덤핑율	보조금율	무역위원회
호주	29.37%	N/A	미정
브라질	33.14% - 34.28%	11.09% - 11.30%	미정
일본	4.99% - 7.51%	N/A	미정
네덜란드	3.73%	N/A	미정
터키	3.66% - 7.15%	<i>de minimis</i> (Colakoglu) 6.01%	미정
영국	33.06%	N/A	미정
<b>한국</b>	<b>3.89% (포스코)</b> <b>9.49% (현대제철)</b> <b>5.55% (기타)</b>	<b>57.04% (포스코)</b> <b>3.89% (현대제철)</b> <b>3.89% (기타)</b>	<b>미정</b>

## American Trade Enforcement Effectiveness Act (2015) (a.k.a. Leveling the Playing Field Act)

- **Adverse Facts Available (AFA, 사용가능한 불리한 사실):** 만약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는 보강자료없이 제소자가 주장하는 가장 높은 덤핑율 또는 보조금율을 추정할 수 있음. 또한 만약 조사대상이 대응했을 경우 예상가능한 덤핑율 또는 보조금율을 고려하지 않아도 됨
- **왜곡된 시장:** 상무부는 수출국의 시장 가격 또는 비용이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시 정상가(normal value)를 계산하는데 제 3국 의 가격과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
- **자발적 조사대상 (Voluntary Respondents):** 상무부 지나치게 부담(unduly burdensome)이 될 경우 자발적 조사대상 요청을 거부할수 있음

## American Trade Enforcement Effectiveness Act (2015) (a.k.a. Leveling the Playing Field Act)

### 실질적 피해 관련

- 무역위원회는 해당산업이 수익률이 있거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피해 부정 판결을 내릴수 없음
- 고려해야 하는 추가 요인: 총이익과 순이익, 대출지불능력, 자산수익율
- 위의 두가지 이유로 긍정판정비율이 높아짐
- 자체소요생산(captive production)기준 수정: 만약 미국 생산자의 제품이 하류제품(downstream product) 생산에 주로 쓰인다면 실질적피해 판단을 위해 상업시장(merchant market) 평가에 집중

## 사후대책

- 연례재심 (Administrative Reviews)
- 신규수출자 심사 (New Shipper Reviews)
- 미국 국제무역 법원에 항소 (Appeal to the U.S. International Court of Trade)
- WTO 제소

## 사후대책

### 연례재심 (Administrative Reviews)

- 상무부 긍정예비판정 공포 후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예상액을 예치 또는 관세 증서를 제출
- 최종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율은 12 - 30개월 후 연례재심에서 판단
- 연례재심결과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위한 새로운 현금예치율(cash deposit rate)이 되면 이는 그 다음해 연례재심에서 다시 검토됨

## 사후대책

### 신규수출자심사 (New Shipper Reviews)

- 신규 수출자의 경우 빠른심사(expedited review)를 통해 개별 덤핑율 또는 보조금율을 평가 받을 수 있음.
- 신규 수출자는 해당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기간에 해당물품을 수출한 기록이 없어야 하며 그 기간동안 수출한 수출자의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사우대책

#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항소 (Appeal to the U.S. International Court of Trade)

- 미국 국제무역법원 항소를 통해 상무부 또는 무역위원회 재심명령을 받을 수 있음. 재심을 통해 기준허가치 이하의 덤핑률 또는 보조금율을 받거나 실질적피해가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향후 연례재심을 받지 않아도 됨.
- 긴시간소요. 3 - 4 년이 걸리기도 함. 법원판결이 나올때면 첫해의 연례재심 결과가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연례재심결과는 법원명령에 따른 조사재심결과 우위에 있음

## 사후대책

### WTO 제소

만약 미국의 무역구제 정책, 법, 그리고 집행방법이 WTO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WTO회원국 정부는 WTO에 제소할 수 있음. 기업을 제소 불가능

미국 우르과이 라운드 조약법 (Uruguay Round Agreements Act) 129조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는 다른행정부처에 WTO분쟁해결 결과 이행을 지시할 수 있음. 하지만 이행지시는 정산되지 않은 물품에만 해당함.

이미 정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고려될 수 있음

- 새로운 법 또는 규칙 제정
- 합의
- 법원명령

WTO 제소에 앞서 해당 물품이 정산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함

## Enforce and Protect Act of 2015

관세청내 무역구제법 집행처(Trade Law Remedy Enforcement Division)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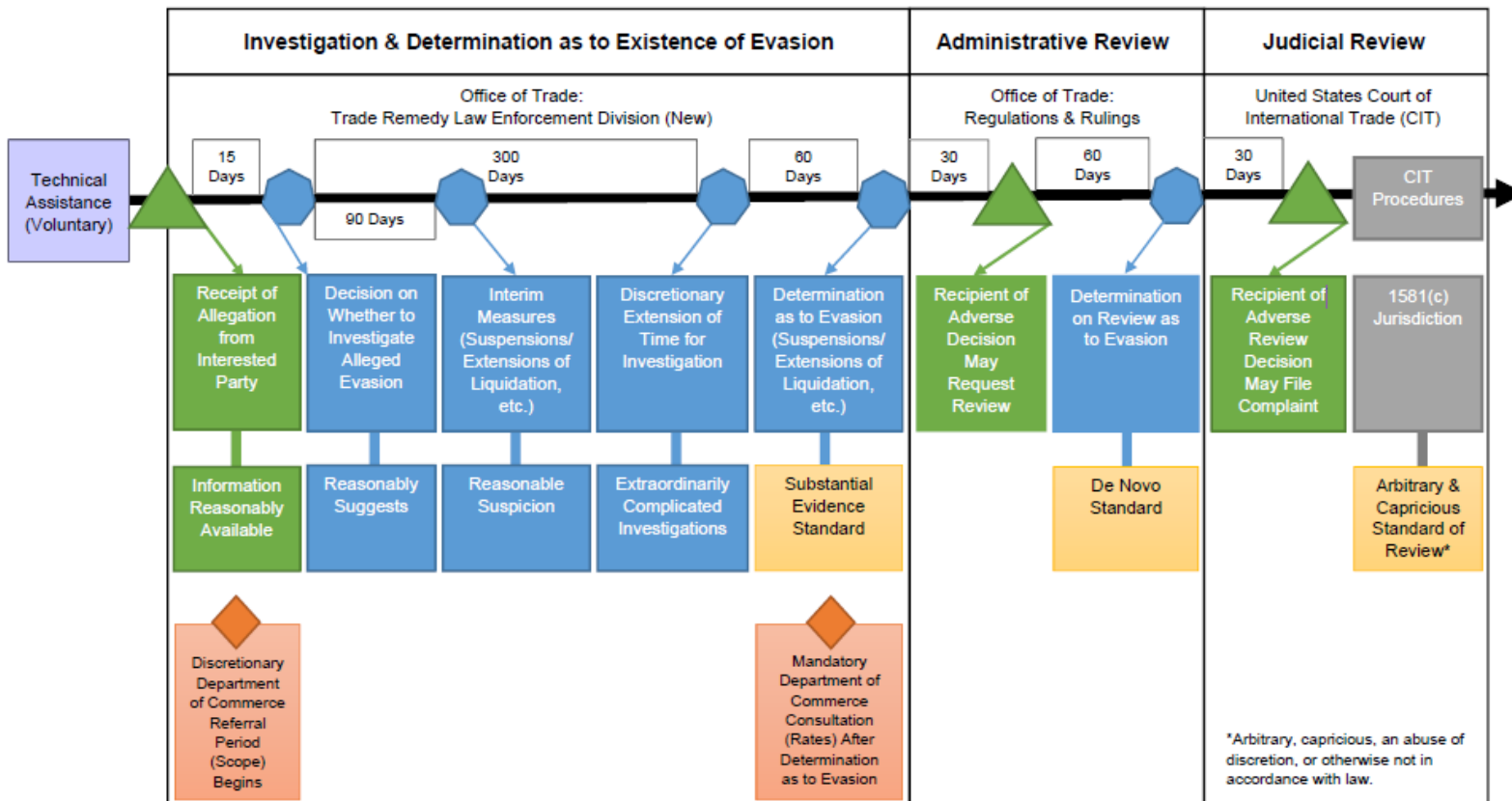
- 반덤핑과 상계관세 회피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음
- 특정 기업이 반덤핑과 상계관세 회피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음
- 반덤핑과 상계관세 회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파악하는 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음

## Enforce and Protect Act of 2015

- Provides procedures and timelines for CBP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evasion of AD/CVD duties filed by interested parties
- If CBP finds duty evasion, it can . . .
  - Suspend liquidation for the duration of the evasion investigation pending the Commerce Department's determination of the applicable AD/CVD duties;
  - Require cash deposits or single entry bonds; OR
  - Request th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section of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to pursue a criminal or civil investigation

# Enforce and Protect Act of 2015

## Section 421 - Investigation of Evasion of Trade Remedy Laws



"Evasion" generally refers to entering merchandise covered by an antidumping/countervailing duty (AD/CVD) order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by means of any document or electronically transmitted data or information, written or oral statement, or act that is material and false, or any omission that is material, and that results in any cash deposit or other security or any amount of applicable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ies being reduced or not being applied with respect to the merchandise.